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2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01. 24.
3. 회부연월일 : 2025. 0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최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측면, OECD 주요국 평균 대비 낮은 전기요금,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전기 수요 효율화,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 등을 위해 전기·가스·열 분야를 통합한 독립적·전문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바,¹⁾ 이러한 점을 반영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1) “전기·가스 통합한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하자”, 한겨레, 2024.7.13., “산업 전기료, 세계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에는 19부·3처·17청 외에도 개별법률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위원회와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특정 지역의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이 있고,

이 기관들은 담당 업무의 독자성 및 계속성 측면,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²⁾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정책 부문만을, 금융위원회는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부문만을 각각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는바,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은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임.

최하위... 'K제조업 버팀목' 된 한전", 서울경제, 2025.3.17.,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감독원 설립이 해법?", 에너지타임즈, 2023.6.28., "에너지 전문가들 "가스산업 발전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 필요", 전기신문, 2023.9.8., "'전기요금 정치화'에 안전관리 뒷전될라...한전 '눈덩이 부채'에 부담", 뉴스1, 2022.1.19. 등 참조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설치목적 및 시행일】

기관명	설치목적	시행일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	2008.02.29.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1994.12.23.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민원 창구는 많지만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별로 없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와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	2008.02.29.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2008.0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 ▶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2020.08.05.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원자력안전기관은 원자력진흥조직 또는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와 원자력이용 및 진흥체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	2011.10.26.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	2024.05.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법」 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2006.01.01.* 2020.06.09.**

기관명	설치목적	시행일
새만금 개발청	▶ 기존 새만금사업을 수행해 온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2013.09.12.* 2020.06.09.**

주1. * 개별법에 근거한 최초 시행일자

2. ** 정부조직법에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포함된 날짜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21호, 이하 “에너지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안에서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역할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³⁾가 수행해 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수급 안정, 전기사업 인허가, 전기요금·시장규칙 등의 인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기준 마련 및 감시·조사 등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전기위원회⁴⁾가 수행하는 전기사업 및 전기시설사업과 관련된 분쟁

3)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발전사업 등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인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마련 및 감시·조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 계획의 승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전기신사업자 등록 및 약관의 신고 대상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의 재정(조정) 등에서

가스·열 에너지 부문으로 확대하여 전기·가스·열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감독, 전기·가스·열에너지 수급조정 명령, 전기·가스·열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등 집행까지 포함하고, 그 기능은 독자적인 집행영역을 가진 기구로서 규정하고 있음.

법적 근거	주요업무	주체
전기법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업부 장관
전기법 제2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기법 제7조	발전사업 등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인가	
전기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7조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인가	
전기법 제27조의2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마련 및 감시·조사	
전기법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 계획의 승인	
전기법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전기법 제7조의2	전기신사업자 등록 및 약관의 신고 대상	전기위원회
전기법 제3조	전기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재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를 토대로 재작성

- 4) 전기위원회는 1998년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전기사업 등의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재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에너지 자원실장이 겸임),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됨.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기위원회 vs 전기가스열위원회】

구분	전기위원회 (현행)	전기가스열위원회 (에너지법안)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
성격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	「전기사업법」 제53조	「에너지법」 개정안 제10조의2
설치 목적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위원장	1명(민간 위원장)	1명(정무직 공무원)
위원	9명 이내(위원장 포함) ※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3년, 연임 제한 없음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3년, 한 차례만 연임
사무 기구	사무국(국장: 3·4급 또는 4급)	사무처(처장: 정부위원)
기능	▶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 부과 ▶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인가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전기·가스·열 수급안정화와 국민 공익보호 및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감독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감시 및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명령 ▶ 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구분	전기위원회 (현행)		전기가스열위원회 (에너지법안)	
	기존 전기 위원회 사무	+< 전기 분야 > ▶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무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지도·감독	+< 가스 분야 > ▶ 가스사업의 허가·변경허가·승인·행정처분 ▶ 가스요금 승인 ▶ 한국가스공사 지도·감독 ▶ 가스 관련 분쟁 조정	+< 열 분야 > ▶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변경허가·행정처분 ▶ 집단에너지요금 신고처리 ▶ 한국지역난방공사 감독 ▶ 집단에너지 관련 분쟁 조정

자료 : 행정안전부

이렇듯 전기·가스·열에너지 부문은 전국적 단위이고 그 기능은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지 않고 독립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담 위원회의 신설은 현행법 체계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부합한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미국은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 독일은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영국은 가스전력시장규제청(OfGEM), 일본은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 등 독립적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업허가 또는 표준요금·망요금 결정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 중 미국·영국·독일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됨.

【해외 주요국 사례】

국가	명칭 (근거법)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
미국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 (「연방전력법」 제402조)	위원회(5명), 조직(약 1,500명) ↳ 대통령이 임명	사업허가(수력) 州間 도매/망요금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청 (OfGEM)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가스법」 제1조/ 「전기법」 제1조)	•위원회(10명), 조직(약 971명) ↳ 위원장 및 위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임명	사업허가 표준요금 망요금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에너지산업법」)	•기관장 및 부기관장(2명) : 대통령 임명 •조직(10개 실무부서, 11개 결정위원회)	사업허가 망요금
일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 (「전기사업·가스사업법」)	•위원회(5명), 조직(5개부서, 약 130명) ↳ 경제산업성 장관 임명 •경산성 산하기관 (가격 규제 최종 권한은 경산성 보유)	규제요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
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⁵⁾ 에너지 수급안정을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
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위한 제반 조치⁶⁾ 등 에너지이용 정책은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관)가 수행하게 되고,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에서는 전기·가스·열 에너지공급 정책을 맡게 되는 등 두 기관이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공급 정책을 각각 담당하게 되어 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러한 사일로(silo) 조직체계가 에너지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너지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구분	심의·의결사항
전기 사업법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 부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거래가격의 상한, 차액계약의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도시가스 사업법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의 제한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명령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에 대한 명령
집단에너지 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원상회복 명령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
기타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 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및 산업부 장관,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전반의 업무를 2차관 산하에 수행 중인 상황에서 에너지정책체계 분산으로 인한 에너지원별 전문성 및 업무 연계성 저하, 정책협의 및 조정애 애로가 예상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5개과⁷⁾ 및 전기위원회가 담당하는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의 일부 업무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구조, 요금제도 및 거버넌스 등이 전혀 다른 전기·가스·열 부문의 규제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은 에너지원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질 수 있고 거버넌스 개편이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9

7) 전력정책관실 4개과(전력산업정책과, 전력시장과, 산업분산에너지과, 전력계통혁신과)는 전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산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정책, 전력계통의 운영, 한국전력공사 지도·감독 등을,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는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정책 수립, 가격제도 운영, 사업허가 등을 담당함.